



보배섬 **진도**

**전망좋은 □관광해안도로 □조성사업 □덕원스테이 □
진도 □군 관리 계획 □공원 □문화공원 □
및 □공원 조성 계획 □결정 □변경 □□안 □**

2025. 09.

Jindo

위 치 도



1. 사업의 개요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 진도읍 산월리 일원에 다도해 자연경관 활용 및 주변 자원과 연계한 관광편의시설을 조성하여 관광사업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망좋은 관광해안도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공원 조성을 통해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휴식·정서 함양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 공간시설 공원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따라 군계획시설(공원)을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함

2. 사업의 내용

- ▣ 과 업 명 : 전망좋은 관광해안도로 조성사업(낙원스테이)
군관리계획(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 변경
- ▣ 위 치 : 전남 진도군 진도읍 산월리 산2-3번지 일원
- ▣ 면 적(변경) : 기정 6,614㎡
변경 7,438㎡ (증 824㎡)
- ▣ 사 업 비(변경) : 기정 2,863 백만원 (국비 1,425, 군비 1,438)
변경 2,883 백만원 (국비 1,410, 군비 1,473)
- ▣ 사업기간(변경) : 기정 2022년 ~ 2023년
변경 2022년 ~ 2026년
- ▣ 시 행 자 : 진도군수

3. 입안내용

-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 공간시설
 - 공원 (변경) : 기정 6,614㎡ → **변경 7,438㎡ (증 824㎡)**

II. 관련법규 검토

1. 군계획시설 관련 법규

구분	근거법령	관련 조항	내용	법률검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도서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기초조사결과·재원조달방안 및 경관계획 등을 포함)를 작성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 작성
		제28조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 및 군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 의회의견청취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 결정 (소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은 제외)
		제29조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군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별표4 권한위임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정권자(권한위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남도지사 → 진도군수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별표4) - 공원 결정 (근린공원 및 주제공원 30만㎡ 미만)
		제30조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도지사는 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원 결정은 진도군 결정사항으로 진도 군계획위원회 심의 결정
		제43조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계획시설(공원) 결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모 : 7,438㎡
		시행령 제25조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 할 수 있음 가. 단위 도시·군계획시설부지 면적 또는 법 제40조의5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이하 "입체복합구역"이라 한다)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2) 공원 및 녹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 나) 최초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후 변경되는 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이고, 최초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당시 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면적이 감소되는 경우. 다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호의 완충녹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같은 법을 준용하여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 나. 지형사정으로 인한 도시·군계획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한 시설부지의 불가피한 변경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지면적 5% 이상의 변경은 중대한 사항 변경에 해당함 - 공원 : 기정 6,614㎡ 변경 7,438㎡ (증 824㎡, 12.5%)

2. 기초조사 검토사항

구분	근거법령	관련 조항	내용	법률검토	결과
전략 환경영 영향 평가	환경영향 평가법	시행령 제7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종류 (시행령 별표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기반시설의 설치·정비, 지구단위계획은 제외) ※도시지역(녹지지역제외):6만㎡이상 비도시지역 : 1만㎡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반시설 설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님 - 공원 : 7,438㎡ 	-
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	자연재해 대책법	시행령 제6조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대상 및 협의방법 등 (시행령 별표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군관리계획의 경우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함.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부지면적 5천㎡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지면적 30% 미만의 변경은 재해영향성검토협의의 재협의 대상이 아님 - 공원 : 기정 6,614㎡ 변경 7,438㎡ (증 824㎡, 12.5%) 	-
		시행령 제6조의2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다시 해야 한다. - 개발계획등의 부지면적이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토지 적성평가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지침	지침1-3-5 토지적성평가 실시 제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 공간시설(체육공원·묘지공원 및 유원지는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토지적성평가 제외 	-
재해 취약성 분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침1-3-5 재해영향성분석 실시 제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 개발행위규모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주거지역 1만㎡ 미만) -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5년 이내에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한 경우 재해취약성분석 제외 	-
교통성, 환경성, 경관성 검토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지침	제2장 계획설명서 1-6-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설명서에는 기초조사결과서, 토지적성평가검토서, 재해취약성분석결과서, 교통성검토서, 환경성검토서, 경관검토서, 도시·군계획시설 재검토서가 첨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1-6-2-1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성·환경성·경관성검토서 작성 	교통성,환경성, 경관성검토서 작성
국가유산 영향진단	국가유산 영향진단법	시행령 제5조 영향진단의 대상 사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면적이 3만㎡ 이상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면적 3만㎡ 미만으로 문화재지표조사 대상이 아님 - 사업부지 면적 : 7,438㎡ 	-

3. 관련법규

구 분	관 련 조 항	내 용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제52조 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절에서 "공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의 공원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설치하는 공원
	규칙 제53조 공원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지역 안에 설치하는 공원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공원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권공원: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공원의 성격으로 설치·관리하는 공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 근린공원: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주제공원: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역사공원: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나. 문화공원: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다. 수변공원: 도시의 하천가·호숫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제1항 각 호의 공원이 갖추어야 하는 규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도시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에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그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이하 "공원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입안하여야 한다.
	제16조의2 공원조성계획의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원조성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시·도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시·도도시공원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시·도도시공원 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한다. 공원조성계획의 변경 내용이 해당 공원의 주제 또는 특색에 변화를 가져오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도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시·도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말한다)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의 변경(공원시설 부지 중 변경되는 부분의 면적의 규모가 3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소규모 공원시설의 설치 등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게소, 긴 의자, 화장실, 울타리, 담장, 게시판, 표지 및 쓰레기통 등 이동 또는 설치가 쉬운 33제곱미터 이하의 공원시설의 설치 - 공원시설의 위치 변경 -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19조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공원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공원조성 계획에 따라 설치·관리한다.

3. 관련법규

구 분	관 련 조 항	내 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도시공원이 갖추어야 하는 규모는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별표 3에 의하여 도시공원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도시공원이 지니고 있는 기능이 서로 조화될 수 있도록 해당도시지역 전반에 걸친 환경보전, 휴양·오락, 재해방지·공해완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시공원이 균형있게 분포되도록 하여야 한다. 			
		공원구분	설치기준	유치거리	규모
		근린공원	제한없음	500미터 이하	1만제곱미터 이상
		문화공원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시행규칙 제9조 공원시설의 설치·관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공원시설은 도시공원의 기능을 다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린공원 중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및 도보권 근린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주로 일상의 옥외 휴양·오락·학습 또는 체험 활동 등에 적합한 조경시설·휴양시설·유희시설·운동시설·교양시설·편익시설·도시농업시설 및 별표 1 제9호에 따른 그 밖의 시설(가목, 나목 및 마목은 제외한다)로 하며, 원칙적으로 연령과 성별의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문화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문화자원의 보호·관람·이용·안내를 위한 시설로서 조경시설·휴양시설(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은 제외한다)·운동시설·교양시설·편익시설 및 동물놀이터(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설치를 허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시설 :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공원관리시설, 도시농업시설, 그밖의 시설 			
	시행규칙 제11조 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공원 안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의 부지면적은 다음의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나의 도시공원 안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합계는 해당도시공원의 면적에 대하여 별표 4의 비율에 적합할 것 			
		공원구분	공원면적	공원시설부지면적	
		근린공원	3만㎡ 이상 10만㎡ 미만	100분의 40 이하	
	문화공원	전부 해당	제한 없음		

III. 대상지 및 주변지역 현황

1. 대상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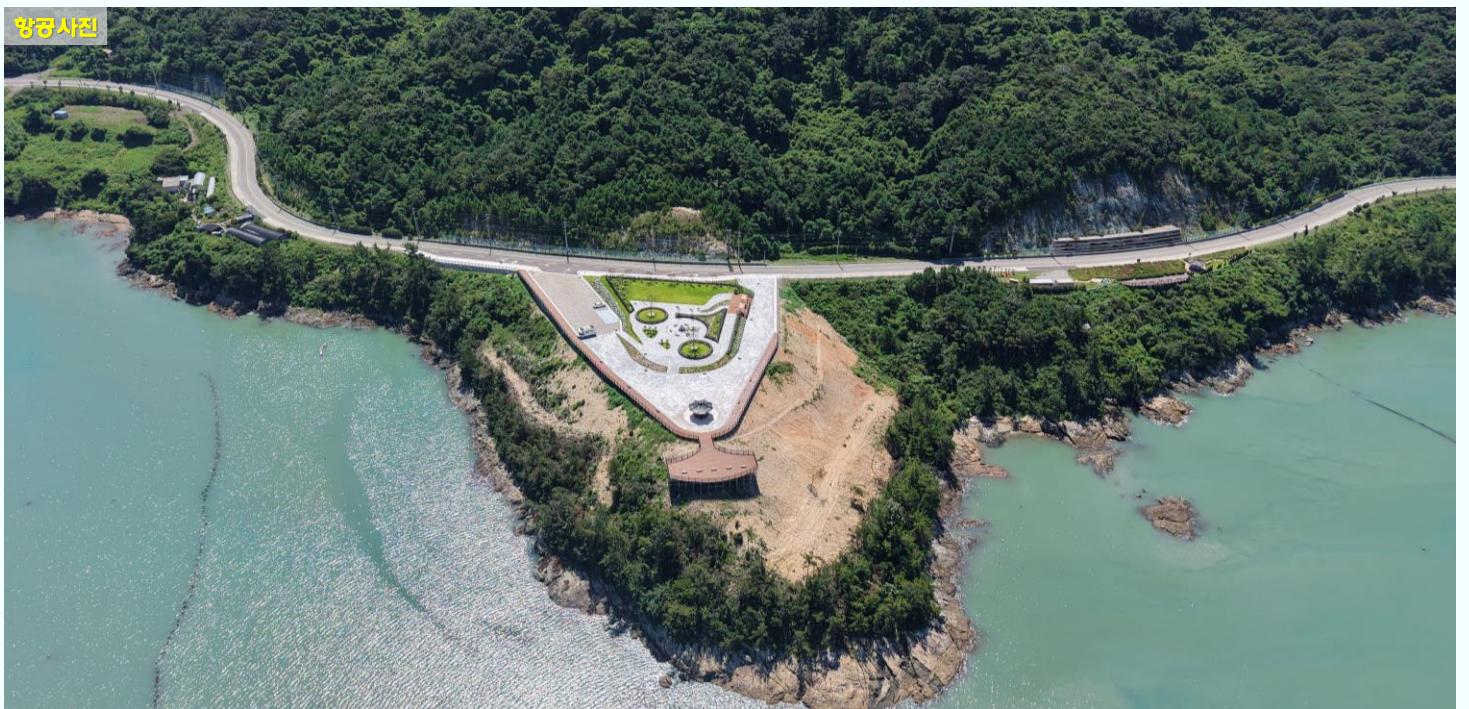
- ▣ 지 형 : 대상지는 행정구역상 진도읍 산월리에 위치하고, 쉬미항과 바다가 인접한 지역으로 농림지역과 보전관리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음
- ▣ 토지이용 : 사업대상지는 지목상 대부분이 임야 및 도로로 구성되어 있음

2. 주변지역 현황

- ▣ 용도지역·지구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특화경관지구
- ▣ 기반시설 : 대상지는 지방도803호선에 연접하고 있어 접근성이 용이함
- ▣ 토지이용 : 대상지를 포함한 주변지역은 농림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대상지 남동측으로 진도군청(약 2km)이 위치하고있음



3. 현황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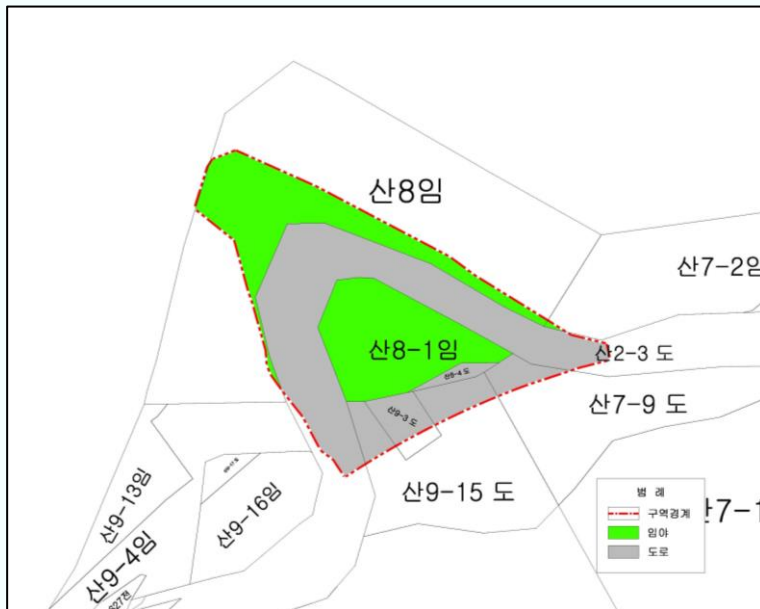




4. 지목별 현황

■ 사업대상지의 지목별 현황은 도로 4,050㎡(54.5%), 임야 3,388㎡(45.5%) 순으로 이루어져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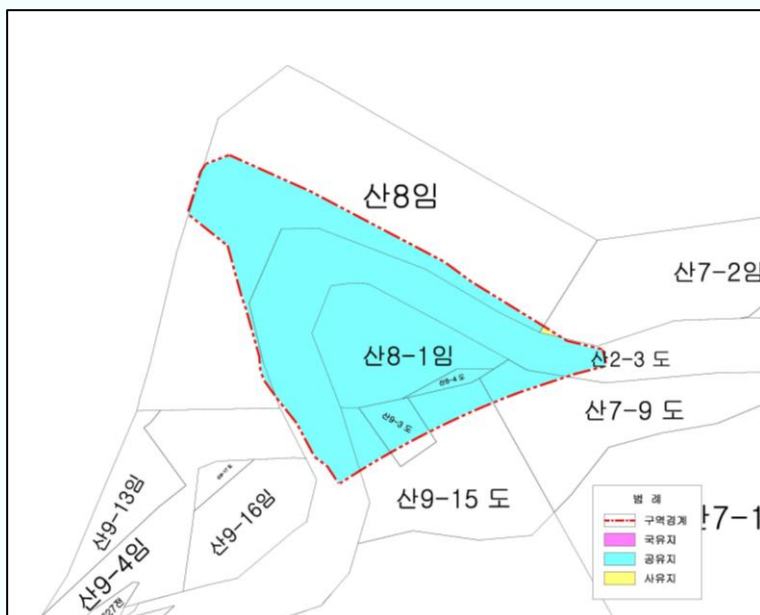
구 분	필지수	면 적(㎡)	구성비(%)
계	8	7,438	100.0
임야	5	3,388	45.5
도로	3	4,050	54.5



5. 소유자별 현황

■ 사업대상지의 소유자별 현황은 공유지 7,431㎡(99.9%), 사유지 7㎡(0.1%) 순으로 이루어져 있음

구 분	필지수	면 적(㎡)	구성비(%)
계	8	7,438	100.0
사유지	1	7	0.1
공유지	7	7,431	99.9
국유지	-	-	-



6. 표고분석

- 사업대상지는 40m 미만의 지형이 100.0%를 이루고 있으며,
- 최고표고 35.0m, 최저표고 21.2m, 평균표고 27.9m로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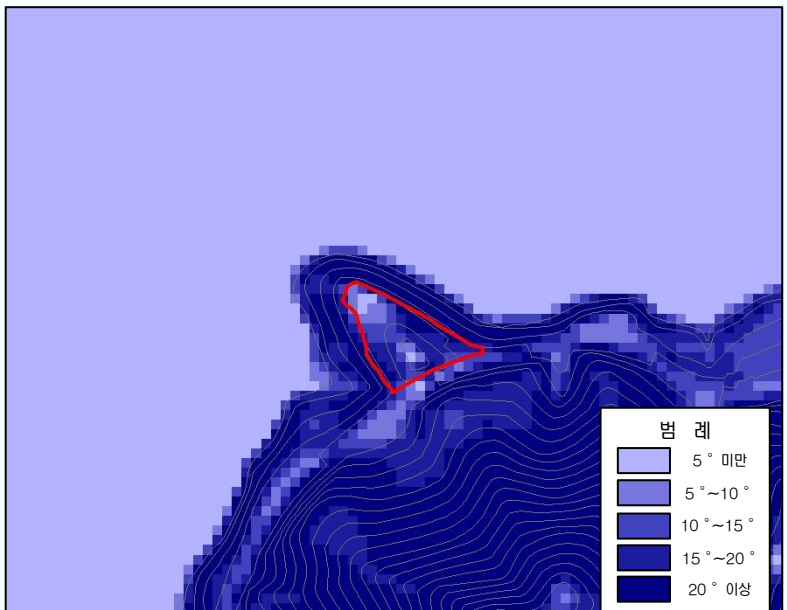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합 계	7,438	100.0
20m 미만	-	-
20m ~ 40m	7,438	100.0
40m ~ 60m	-	-
60m 이상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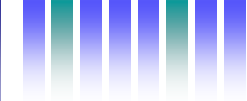


7. 경사분석

- 사업대상지의 경사도는 20°미만이 77.3%를 이루고 있으며,
- 최고경사 최저경사 0.3°, 최고경사 26.0°, 평균경사 15.2°로 나타나고 있음

구 분	면적(m ²)	구성비(%)
합 계	7,438	100.0
5° 미만	397	5.3
5° ~ 10°	1,091	14.6
10° ~ 15°	1,686	22.7
15° ~ 20°	2,578	34.7
20° 이상	1,686	22.7





IV. 부문별계획

1. 토지이용계획(안)

▣ 기반시설용지

- 기반시설면적은 전체의 36.6%(2,724㎡)로서 공원 내 시설간의 연결을 담당하는 내부동선으로 도로와 광장으로 구분

- 도로는 주요 시설간의 연결을 목적으로 하고, 광장은 내부시설간 연계 및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계획

▣ 편익시설용지

- 편익시설용지는 주차장과 휴게음식점을 설치하여 방문객에 편의를 제공

- 휴게음식점을 공원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사업대상지 초입부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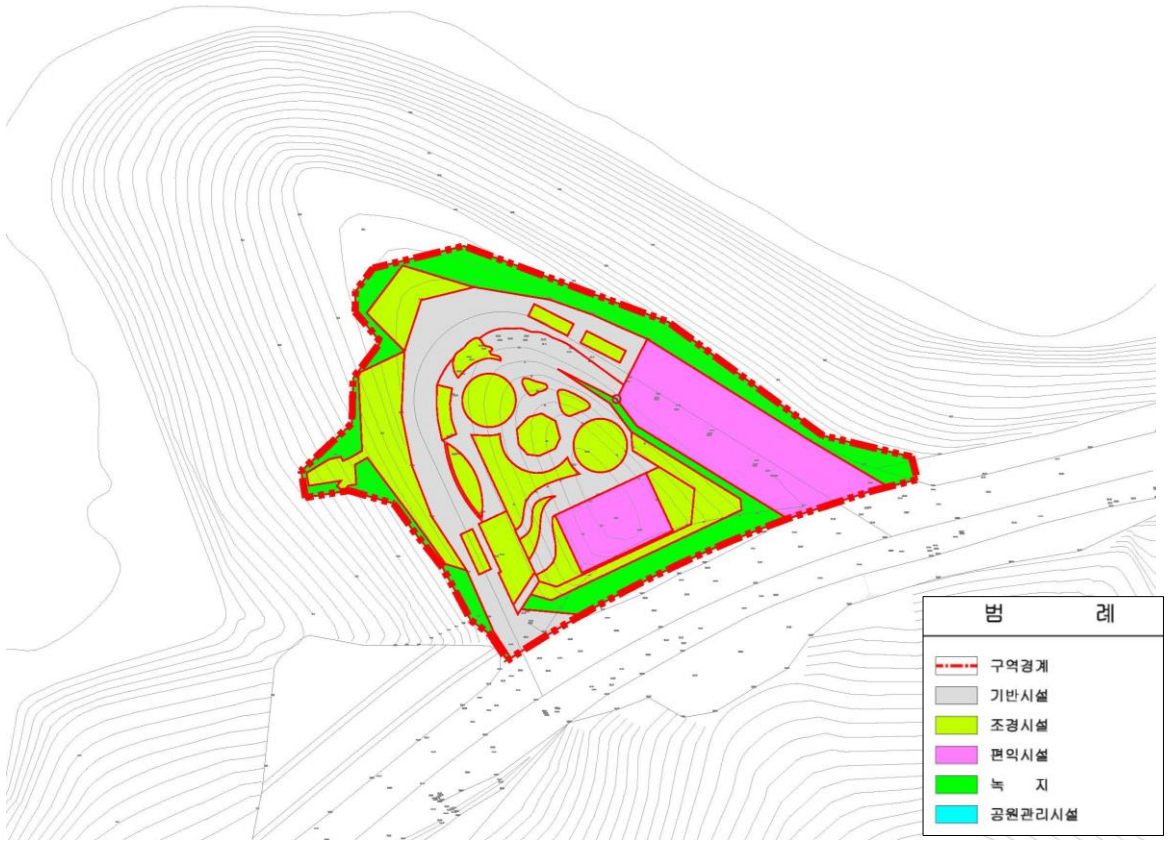
▣ 조경시설용지

- 조경시설용지는 데크전망대, 그물망계단데크 등 방문객들의 휴식공간과 볼거리를 위해 배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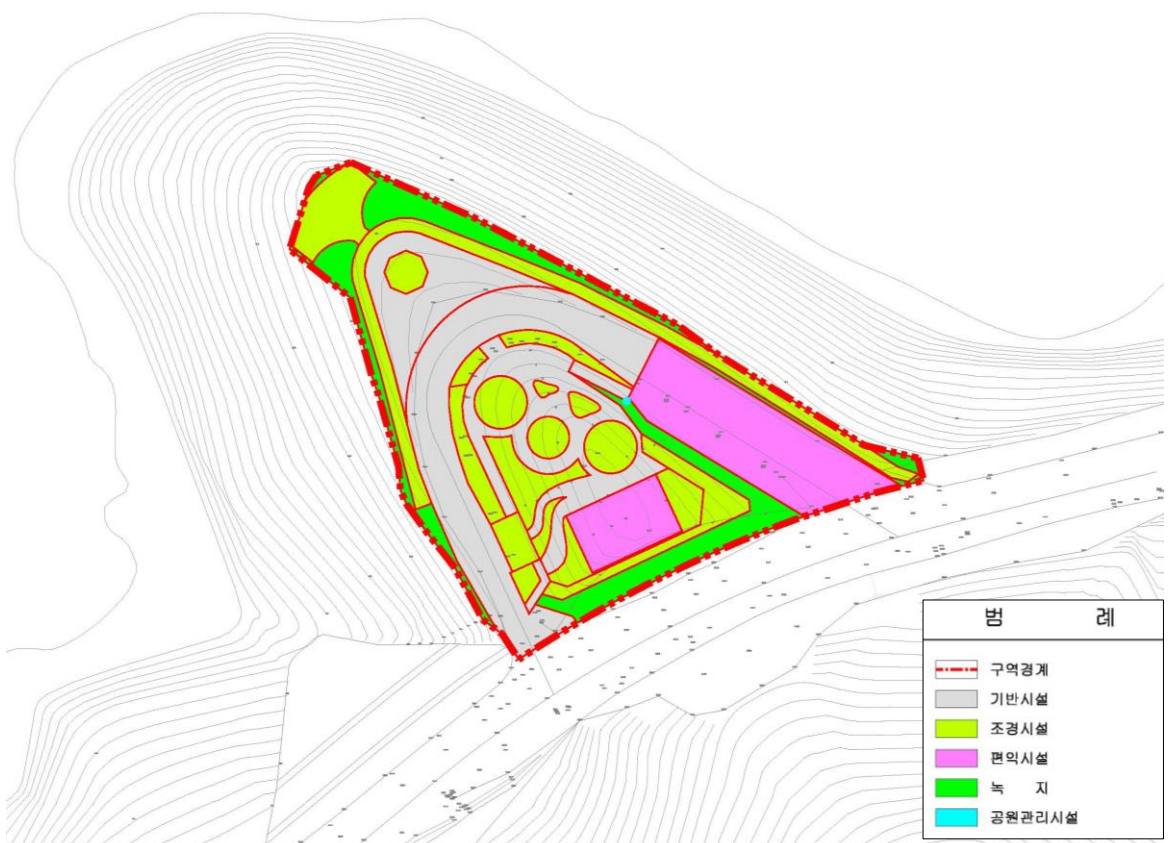
구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6,614	증)824	7,438	100.0		
시설	소계	5,220	증)1,077	6,297	84.7	시설률 84.7%
	기반시설	2,015	증)709	2,724	36.6	도로, 광장
	편익시설	1,316	증)8	1,324	17.8	주차장, 휴게음식점(1층)
	조경시설	1,889	증)60	2,249	30.3	화단, 데크전망대, 그물망계단데크
	공원관리시설	-	-	-	-	안내판
녹지	1,394	감)253	1,141	15.3	녹지율 15.3%	

▶ 토지이용계획(안)도

기정



변경





2.공원조성계획(안)

시설 구분	도면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		구성비 (%)		건축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6,614	7,438	100.0	100.0	230.0	230.0	230.0	230.0	
시설면적 계				5,220	6,297	78.9	84.7	230.0	230.0	230.0	230.0	시설율 84.7%
기반 시설	소 계			2,015	2,724	30.4	36.6	-	-	-	-	
	변경	1-1	도로	1,066	1,317	16.1	17.7	-	-	-	-	
	변경	1-2	광장	949	1,407	14.3	18.9					
편익 시설	소 계			1,316	1,324	19.9	17.8	230.0	230.0	230.0	230.0	
	변경	2-1	주차장	986	994	14.9	13.4	-	-	-	-	
	기정	2-2	휴게음식점	330	330	5.0	4.4	230.0	230.0	230.0	230.0	1개동(1층)
조경 시설	소 계			1,889	2,249	28.6	30.3	-	-	-	-	
	변경	3-1	화단	1,075	1,264	16.3	17.0	-	-	-	-	벤치10개, 나무조형물1
	변경	3-2	데크전망대	596	867	9.0	11.7	-	-	-	-	
	폐지	3-3	포토존전망데크	37	-	0.6	-	-	-	-	-	
	폐지	3-4	휴식계단데크	55	-	0.8	-	-	-	-	-	
	변경	3-5	그물망계단데크	126	118	1.9	1.6	-	-	-	-	
공원 관리 시설	기정	4-1	안내판	-	-	-	-	-	-	-	-	1개
녹 지				1,394	1,141	21.1	15.3	-	-	-	-	녹지율 1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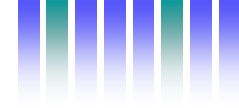
➤ **공원조성계획(안)도**

기정



변경





3.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 공원 결정(변경) 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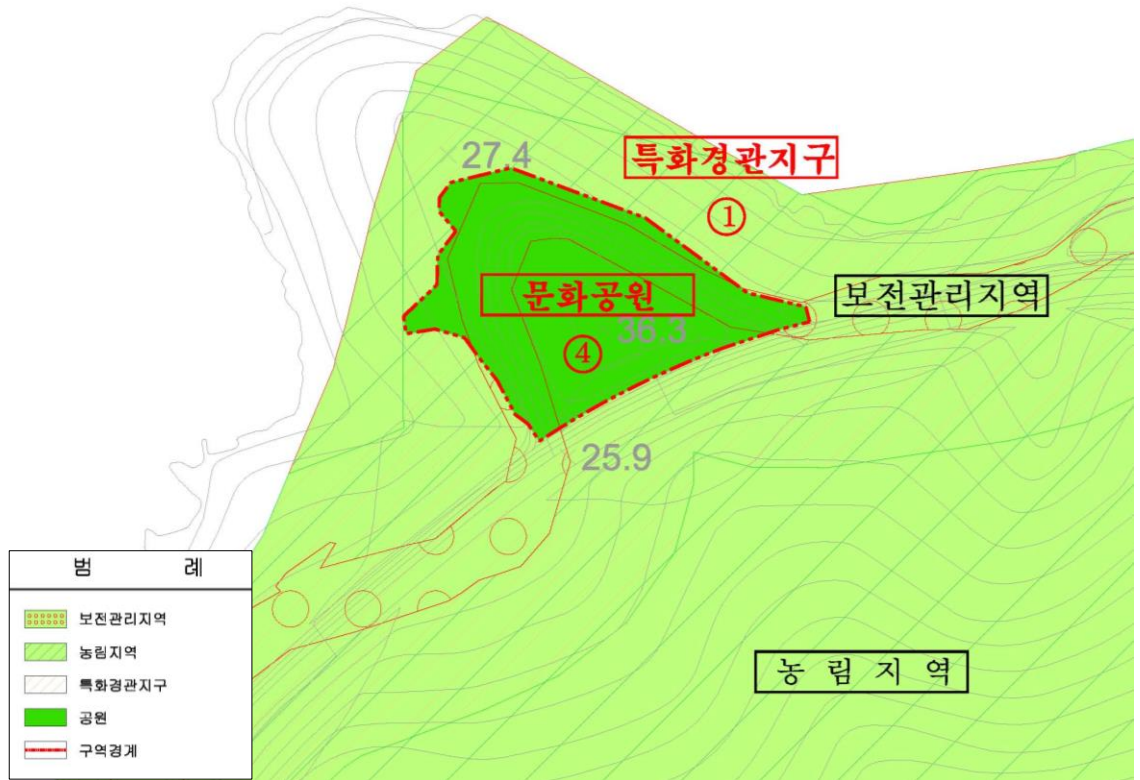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4	전망좋은 공원	문화공원	진도군 진도읍 산월리 산2-3일원	6,614	증)824	7,438	진도군고시 제2022-113호 (2022.12.22)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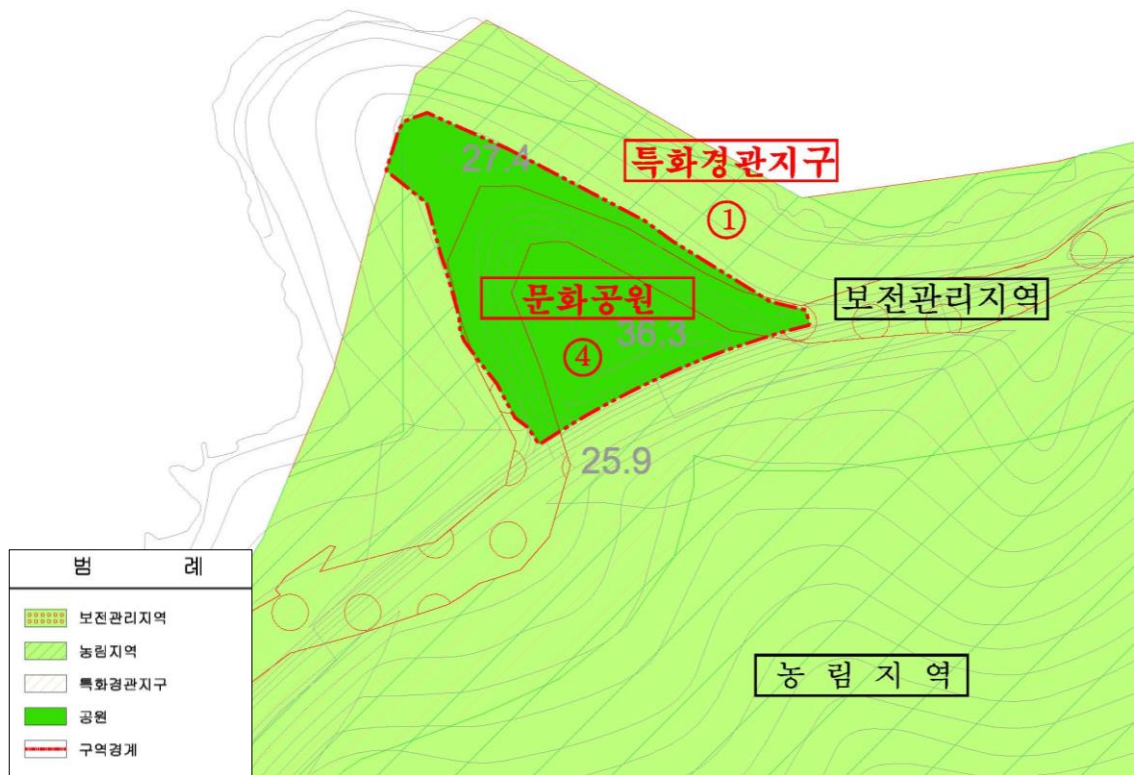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4	문화공원	◦변경 - A = 기정 6,614㎡ 변경 7,438㎡ (증 824㎡)	◦진도읍 산월리 일원에 다도해 자연경관 활용 및 주변 자원과 연계한 관광편의시설을 조성하여 관광사업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망좋은 관광해안도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휴식·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해 공원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도

기정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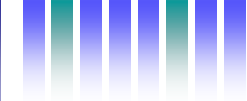
VI. 경관계획

1. 조망점 선정

문화공원 조성에 따른 예비조망점을 8점(근경3점, 중경3점, 원경2점) 선정하였으나, 사업대상지의 경우 계획의 특성상 주요 간선도로 및 도로 결절점에서 가시되는 조망점 4점을 선정하여 문화공원 조성에 따른 경관변화에 경관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음

조망점	위 치	거 리	주요경관요소	비 고
VP 1	대상지 남서측 서부해안로변	50m	하늘, 건축물	근경
VP 2	대상지 남서측 서부해안로변	170m	하늘, 건축물	근경
VP 3	대상지 동측 서부해안로변	230m	하늘, 건축물, 바다	중경
VP 4	대상지 동측 서부해안로변	560m	하늘, 건축물, 바다	원경





경관시뮬레이션

조망점	시행전	시행후
VP 1 (근경)		
VP 2 (근경)		
VP 3 (중경)		
VP 4 (원경)		

VI.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절차

기 초 조 사 단 계		기 초 조 사 (국토계획법 제27조)	교통성·환경성·경관성 검토서
군 관 리 계 획 결 정 단 계	입안권자 (진도군수)	군 관 리 계 획 입 안 (국토계획법 제25조)	군관리계획 도서 계획설명서 등
		주 민 의 견 청 취 (국토계획법 제28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일간지 2 이상 공고 14일 이상 열람
		지 방 의 회 의 견 청 취 (국토계획법 제28조)	의회의견 청취 대상
		관 련 부 서 협 의 (국토계획법 제30조)	
		진 도 군 계 획 위 원 회 심 의 (국토계획법 제30조)	심의 : 문화공원
	결정권자 (진도군수)	군 관 리 계 획 결 정 (변 경) (국토계획법 제30조)	전라남도지사 → 진도군수 (권한위임)
		결 정 (변 경) 고 시 . 공 람 (진 도 군 수) (국토계획법 제30조)	
	지 형 도 면 고 시 (진 도 군 수) (국토계획법 제32조)		
실 시 계 획 수 립 단 계		실 시 계 획 작 성 (국토계획법 제88조)	
사 업 시 행 단 계		사 업 시 행 (사업시행자)	